

[별표 1의2] <신설 2007.1.24>

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·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
설계범위(제2조의3 관련)

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	기술인력	설계범위
성능위주의설계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. 가. 법 제4조(소방시설업의 등록)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나.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	소방기술사 2인 이상	제2조의2와 같다.